

[별표 2] <신설 1996.6.29, 1999.5.10, 2000.5.16>

등록취소·설립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(제39조제1항관련)

가. 감정평가업자

해 당 사 항	처 분 기 준
1. 감정평가사사무소(합동사무소인 경우를 제외한다)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	·등록취소
2. 감정평가사사무소(합동사무소인 경우를 제외한다)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사망한 경우	·등록취소
3. 감정평가업자가 개설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	·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
4.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	·업무정지 1년
5.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	·등록취소 또는 법인설립·합병·정관변경인가취소
6. 법 제18조제5항 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	·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
7. 법 제18조제7항 또는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	·업무정지 6월
8.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	·업무정지 6월
9.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	
가. 법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	·업무정지 1월
나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	·업무정지 1년
다.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·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	·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
라.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	·업무정지 3월
마.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	·업무정지 6월
바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	·업무정지 1년
사.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	·업무정지 6월
10.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 정지처분기간중에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	·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

<p>11.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</p>	
<p>가.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3월</p>
<p>나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위치·지형·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3월</p>
<p>다.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</p>	<p>·등록취소</p>
<p>라. 법 제19조제6항, 이 영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정관변경신고나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1월</p>
<p>마.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2월</p>
<p>바.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의 작성·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</p>	
<p>1)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1월</p>
<p>2) 감정평가서의 교부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1월</p>
<p>3)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·날인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1년</p>
<p>4)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2월</p>
<p>5)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3월</p>
<p>사.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3월</p>
<p>아.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서류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3월</p>
<p>자.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정평가사를 3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·당해 사무소 인가취소</p>
<p>차.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6월</p>
<p>카. 위의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1월</p>

나. 감정평가사

해 당 사 항	처 분 기 준
1. 법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·업무정지(해당 기간 동안)
2.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	·업무정지 1년
3.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	·업무정지 6월
4.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	
가. 법 제20조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	·업무정지 1월
나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	·업무정지 1년
다.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·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	·업무정지 1년
라.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	·업무정지 3월
마.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	·업무정지 6월
바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	·업무정지 1년
사.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	·업무정지 6월
아.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	·업무정지 1년
5.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	
가.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	·업무정지 3월
나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 위치·지형·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	·업무정지 3월
다.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한 경우	·업무정지 1년
라.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·업무정지 2월
마.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의 작성·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	
1)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	·업무정지 1월

<p>하거나 기피한 경우</p> <p>2) 감정평가서의 교부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</p> <p>3)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·날인한 경우</p> <p>4)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</p> <p>5)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바.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서류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</p> <p>사. 위의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</p>	<p>·업무정지 1월</p> <p>·업무정지 1년</p> <p>·업무정지 2월</p> <p>·업무정지 3월</p> <p>·업무정지 3월</p> <p>·업무정지 1월</p>
---	---